

평생담임교수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를 졸업한 동문의 지도 및 상담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관련제도를 마련하여 평생담임교수제의 정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평생담임교수는 재학 시 4학년 담임지도교수가 담당한다.

제3조 (기능) 평생담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.

1. 동문의 상담에 관한 사항
2. 동문의 진로에 관한 사항
3. 동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강좌에 관한 사항

제4조 (개폐)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재가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